

1. 개정이유

22년 7월 28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불법공매도 적발·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방안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

2. 주요내용

가. 개인 공매도 담보비율 인하(안 제4-25조)

개인 공매도 담보비율을 140 → 120%로 인하

나. 공매도 잔고보고시 대차정보를 포함(안 제6-31조)

순보유잔고 보고서 상세 대차잔고를 포함하여 보고하도록 명확화

다. 90일 이상 대차시 보고의무 부여(안 제6-36조)

공매도 목적 대차 후 90일 경과시 금융당국 보고근거 마련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해당사항 없음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 별첨

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

금융투자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-25조제1항 중 “이상에”를 “이상(신용거래대주의 경우에는 신용거래대주 시가상당액의 100분의 120 이상)에”로 한다.

제6-31조제3항제3호 중 “비율”을 “비율, 대차잔고”로 한다.

제6-3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차입공매도 목적으로 상장증권의 대차거래계약을 체결한 자가 대차계약 체결 후 90일이 경과한 때에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그 내역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-25조(담보비율 등) 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의 신용상태 및 종목별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신용공여금액의 <u>100분의 140 이상</u>에 상당하는 담보를 징구하여야 한다. 다만 매도되었거나 환매청구된 예탁증권을 담보로 하여 매도금액 또는 환매금액 한도 내에서 용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	<p>제4-25조(담보비율 등) 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의 신용상태 및 종목별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신용공여금액의 <u>100분의 140 이상(신용거래대주의 경우에는 신용거래대주 시가상당액의 100분의 120 이상)</u>에 상당하는 담보를 징구하여야 한다. 다만 매도되었거나 환매청구된 예탁증권을 담보로 하여 매도금액 또는 환매금액 한도 내에서 용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
<p>제6-31조(순보유잔고의 보고) ① (생략)</p> <p>③ 영 제208조의2제4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사유발생일로부터 제2영업일이 되는 날 증권시장(시간외 시장을 포함한다)의 장종료 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와 해당 증권이 상장된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금융기관이 제6-30조제3항제1호다목에 따라 해당 증권을 보유하는 경우</p>	<p>제6-31조(순보유잔고의 보고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</p> <p>-----</p>

에는 고유재산 및 각각의 일임재산별, 신탁재산별(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각각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), 그 밖의 투자자재산별로 순보유잔고가 음수인지를 판단한 후 해당 순보유잔고비율을 합산하여 금융기관 명의로 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1. 2. (생략)

3. 매도자의 순보유잔고에 관한 사항 : 순보유잔고 수량 및 비율

④ ~ ⑥ (생략)

<신 설>

1. 2. (현행과 같음)

3. -----
--: -----비율,
대차잔고

④ ~ ⑥ (생략)

제6-36조(대차거래정보의 보고)

차입공매도 목적으로 상장증권의 대차거래계약을 체결한 자가 대차계약 체결 후 90일이 경과한 때에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그 내역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